

2022년도 국방부 주관 일반군무원 장애인 구분 모집 채용계획 공고

2022년도 국방부 주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의 7·9급에 대한 장애인 구분모집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5일
국 방 부 장 관

군무원 응시원서 접수시 유의사항

- 채용시험 공고문에 기재된 응시자 유의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하는 지원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모든 응시자는 반드시 공고문에 기재된 세부내용(응시자 제출서류 내용 등)을 자세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같은 날짜에 전국 동시 실시하는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주관 2022년도 일반군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2개 이상 기관에 중복 또는 복수로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 또는 복수 접수가 확인되는 경우 원서접수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육·해·공군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접수 가능**
- 장애인 구분모집과 일반모집(국방부공고 제2022-136호)간 복수로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시 개인별 입력자료(성명, 연락처, 한국사·영어능력검정시험, 자격·면허증 취득정보 등)는 빠짐없이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부정확한 자료를 입력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채용시험 관련 문의 : 국방부 군무원정책과 군무원채용담당
02-748-5106, 5115, 5289

※ 전화상담 가능 시간 : 평일 오전(09:00~11:30), 오후(13:30~17:30)

1 채용 예정 인원(31명)

응시 부호	채용 직급/인원			응시 자격	근무예정 기관	근무예정 지역	임용 예정일
	직렬	계급	인원				
074	행정	7급	2	• [장애인 구분모집]	체육부대	경북 문경	수시
075	군사 정보	7급	1	• [장애인 구분모집]	정보사	전국	수시
076	통신	7급	1	• [장애인 구분모집]	체육부대	경북 문경	'23.1.1
077	전산	7급	2	• [장애인 구분모집] •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전산 직렬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정보사	전국	수시
078	행정	9급	15	• [장애인 구분모집]	검찰단 계근단 복지단 수송사 재정단 시설본부 정보사 의무사	전국	수시
079	군사 정보	9급	1	• [장애인 구분모집]	정보사	전국	수시
080	기술 정보	9급	4	• [장애인 구분모집]	777사	전국	'22.11.1
081	통신	9급	2	• [장애인 구분모집]	국통사	전국	수시
082	전산	9급	1	• [장애인 구분모집] •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전산 직렬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국통사	전국	수시
083	사이버	9급	1	• [장애인 구분모집] •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사이버 직렬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사이버사	서울	'22.11.1
084	지도	9급	1	• [장애인 구분모집]	정보사	전국	수시

※ 공개경쟁채용시험 직렬별 응시 및 가산 자격증·면허증은 <붙임2> 참조

※ 근무예정 기관·지역 및 임용예정일은 조직개편 등 시험실시기관 또는 임용예정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직급별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면허)증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22. 7. 15.)
까지 취득(최종합격) 하여야 함

2

응시자격

가. 공통 필수자격

2022년 국방부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22. 9. 26.) 현재를 기준으로 「군무원인사법」 제10조의 결격사유 및 제31조의 정년에 해당하거나,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4조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군무원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군무원인사법 제31조(정년)

- 군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예외로 한다.

나. 공개경쟁채용 시험 응시자격

채용 계급별 응시연령(아래 '라'항 참조)에 해당하고, 채용직급별 자격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충족해야 함

다.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 등

-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2)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2. 5. 11.)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3)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위 외 다른 직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단, 국방부 주관 시험 내 다른 직위에 중복하여 응시할 수 없음)
- (4) 공개경쟁채용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의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사본 중 1부를 '22. 5. 24.(화) ~ '22. 5. 26.(목) (우) 0438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군무원정책과 군무원채용담당 앞으로 등기 제출

라. 응시연령

응시 계급	응 시 연 령
7급 이상	20세 이상 (2002.12.31. 이전 출생자)
8급 이하	18세 이상 (2004.12.31. 이전 출생자)

3 시험 일정

구 분	원서접수	관련서류 제출	필기시험 계획공고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합격자 발 표
공개경쟁 채 용	5.6.(금) ~ 5.11.(수)	5.17.(화) ~ 5.19.(목)	6.30.(목) *장소/시간 동시안내	7.16.(토)	8.19.(금) *면접계획 동시안내	9.20.(화) ~ 9.26.(월)	10.7.(금)

- ※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 시에는 사전 공지함
- ※ 향후 시험일정,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국방부 군무원 채용관리' 홈페이지(<http://recruit.mnd.go.kr>)의 <공지사항>에만 공지함

4 시험방법 및 필기시험 과목

가. 시험방법

구 분	시 험 방 법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1차) ⇒ 면접시험(2차)

(1) 필기시험 : 공개경쟁채용시험 장애구분모집

- 문제형식 및 문항 수 : 객관식 선택형, 과목당 25문항
- 시험시간 : 과목당 25분
- 합격자 선발 :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150%) 범위 내(단,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
- *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동점자는 합격처리함.

* 필기시험 응시 지역 : 서울, 대전, 원주, 광주, 창원

※ 응시원서 작성 시 선택한 지역에서만 필기시험 응시 가능 (원서접수 완료 후 변경 불가)

(2)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기회 부여

- 평가요소: ①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④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⑤ 예의·품행·준법성·도덕성 및 성실성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는 개인발표 후 개별면접 순으로 진행

(3) 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 점수(50%)와 면접시험 점수(50%)를 합산하여 높은 점수를 받는 사람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

※ 이후 ‘신원조사’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모두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을 최종합격자로 확정

나. 필기시험 과목(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별표3) : [붙임1] 참조

5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원서접수

(1) 접수기간 : '22 5. 6.(금) ~ '22 5. 11.(수)

(2) 접수시간 : 접수기간 중 09:00~21:00 운영

(단, '22 5. 7.(토) ~ '22. 5. 8.(일)은 09:00~18:00 / '22. 5. 11.(수)은 18:00에 마감)

※ 지정된 접수시간 외에는 원서접수 시스템에 접속이 불가함.

(3) 접수방법

- 국방부 군무원채용관리 홈페이지(<http://recruit.mnd.go.kr>) <원서접수> 이용
 - ※ 군무원채용관리 로그인은 「I-PIN」 인증(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개인인증 서비스)을 통해서만 가능(*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 응시원서 작성 → 응시수수료 결제 → 응시표 및 응시원서 출력
- 응시수수료(5급 10,000원 / 6~7급 7,000원 / 8~9급 5,000원) 외에 수수료 결제 방법에 따른 소정의 처리비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됨.
 -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 PNG, GIF / 500kb 이하) 필요
 - ※ 원서접수(결제)는 모든 웹브라우저에서 접근 가능
(익스플로러 8/9/10, Chrome, Microsoft Edge 등)
 - *단, 모바일 환경 원서접수(결제)불가**
 - ※ '22. 5. 11.(수) 18:00 이후 응시수수료 결제 시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됨.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게는 사실관계 확인 후 응시수수료(이체수수료 제외 금액)를 환불함.

(4) 필기시험 응시지역 선택 : 공개경쟁채용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시)에서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필기시험 응시 지역 : 서울, 대전, 원주, 광주, 창원

나. 원서접수 취소

(1) 취소기간 : '22. 5. 12.(목) 09:00~18:00

(2) 취소방법

- 국방부 군무원채용관리 홈페이지(<http://recruit.mnd.go.kr>)를 방문하여 취소
-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 환불(이체수수료 제외)

다.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1) 원서접수 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및 기타 기재사항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 (2) 합격자(필기시험, 면접시험) 발표 시 성명을 제외한 응시번호만 표기하므로 본인의 응시번호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3) 응시번호는 원서접수 취소기간 이후 생성됩니다.
- (4) 국방부 및 각 군 주관 시험은 중복 또는 복수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 (5) 응시자는 과거 다른 직위에 응시하면서 서류를 제출하였더라도, 반드시 모든 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공채시험 응시자의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제출

가. 영어능력검정시험

(1) 시험종류 및 응시계급별 기준점수

시험 종류		응시계급별 기준점수	
		7급	9급
토익 (TOEIC)	기준점수	570점 이상	470점 이상
	청각장애	285점 이상	235점 이상
토플 (TOEFL)	기준점수	PBT 480점 이상 CBT 157점 이상 IBT 54점 이상	PBT 440점 이상 CBT 123점 이상 IBT 41점 이상
	청각장애	PBT 319점 이상 CBT 104점 이상	PBT 292점 이상 CBT 82점 이상
텝스 (TEPS) (2018.5.12.전에 실시 된 시험)	기준점수	500점 이상	400점 이상
	청각장애	300점 이상	240점 이상
新텝스 (新TEPS) (2018.5.12. 이후에 실시 된 시험)	기준점수	268점 이상	211점 이상
	청각장애	161점 이상	127점 이상
지텔프 (G-TELP)	기준점수	Level 2 47점 이상	Level 2 32점 이상
플렉스 (FLEX)	기준점수	500점 이상	400점 이상
	청각장애	300점 이상	240점 이상

※ 청각장애의 정도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이거나,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위 표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 가능

* 해당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은**

11 **제출 자료** **참고**

(2)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 범위

- 가)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전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함.
- * 예) 올해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이면 인정
 - * 2019.1.1.이후 시행한 시험의 성적으로서, 시험시행기관의 정책에 따라 2021.1.1.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유효한 성적으로 인정함.
- 나) 2019. 1. 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하여 필기시험 전일까지 발표된 TOEFL 성적,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성적,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성적도 인정
- 다) 해당 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며, 정부기관(각 군 포함)·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 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 * TOEIC, TOEFL, TEPS, G-TELP, FLEX 정규(정기)시험은 일반인 및 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 일정에 따라 매 시험마다 신규출제 방식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함.

(3) 시험성적 제출방법

- 가) 응시원서 작성 시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 명칭, 시험일자, 시험성적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의 경우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 성명을 기재하여야 함.
- * **영어 성적 입력정보 : 시험종류, 시험일자, 점수(성적)**
- 나) 원서접수 시 입력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또는 응시원서 접수 후 발표된 영어 성적을 등록할 경우는 반드시 추가등록을 해야함.
- * 국방부 군무원채용관리 홈페이지(<http://recruit.mnd.go.kr>)를 방문하여 <My Page> → <한국사/영어 성적현황> 에서 수정
 - * 등록기간(원서접수 기간 중) : '22. 5. 6.(금) ~ 5. 11.(수)
 - * 추가등록기간 : '22. 7. 16.(토) 09:00 ~ 7. 20.(수) 18:00 / 기간 내 중단 없음
- 다) 완화된 기준점수 적용대상자는 **11** **제출 자료** 에서 안내된 서류를 '22. 5. 24(화) ~ '22. 5. 26(목)까지 (우체국 소인분 기준) (우) 0438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군무원정책과 군무원채용담당 앞으로 등기 제출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1) 시험종류 및 응시계급별 기준점수

시험의 종류	응시계급별 기준등급	
	7급	9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4급 이상

※ 2020년 5월 이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급수체계 개편에 따른 시험종류의 변동 (초·중·고급 3종 → 기본·심화 2종)과 상관없이 기준(인증)등급을 그대로 적용함.

(2)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범위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하여 4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전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등급)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함.

* 예) 올해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이면 인정

(3) 시험성적 제출방법

가) 응시원서 작성 시 해당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종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인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 한국사 성적 입력정보 : 인증번호(기관 발급), 급수(성적)**

나) 원서접수 시 입력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또는 응시원서 접수 후 발표된 한국사 성적을 등록할 경우는 반드시 추가등록을 해야함.

※ 국방부 군무원채용관리 홈페이지(<http://recruit.mnd.go.kr>)를 방문하여

<My Page> → <한국사/영어 성적현황> 에서 수정

※ 등록기간(원서접수 기간 중) : '22. 5. 6.(금) ~ 5. 11.(수)

※ 추가등록기간 : '22. 7. 16.(토) 09:00 ~ 7. 20.(수) 18:00 / 기간 내 중단시간 없음

다. 시험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응시원서 접수 시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 「공무원 임용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7 공개경쟁채용 시험 응시 자격증

가.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증 소지 필수 직렬(12개)

- 사서, 환경, 전산, 사이버, 항해, 약무, 병리, 방사선, 치무, 재활치료, 의무기록, 영양관리
 - ※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응시 자격증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22. 7. 15)까지 취득하여야 함.
 - ※ 응시 자격증 세부내역은 [붙임2] 참조

나. 수정입력 사유 및 요령

- 원서접수 이후 응시 자격증 신규취득 등에 따라 원서접수 시 입력한 자격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반드시 수정입력 기간에 국방부 군무원채용관리 홈페이지 (<http://recruit.mnd.go.kr>)를 방문하여 해당 변동사항을 수정입력해야 응시 자격증을 소지한 것으로 인정받음
 - ※ 국방부 군무원채용관리 홈페이지(<https://recruit.mnd.go.kr>)를 방문하여 <My Page> → <자격증현황> 에서 수정

다. 수정입력 기간 : '22. 7. 16.(토) 09:00 ~ 7. 20.(수) 18:00 / 기간 내 중단시간 없음

라. 수정입력 항목 : 응시 자격증 종류, 번호, 취득일

* 자격(면허)증은 발급신청일이 아닌 자격(면허)증 발급(취득)일을 기준으로 함.

8 가산점 적용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라' 참고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처 상담센터 ☎1577-0606)으로,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5)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해야 함.

나.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 (1) 적용대상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및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사자 본인 및 가족은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2) 가산비율 :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5%/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3) 적용범위 : 6급~9급 공개경쟁채용 또는 경력경쟁채용 직위에 한함.
- (4) 선발범위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다.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 가산 자격증·면허증 소지자

- (1) 가산 자격증 해당직렬(응시자격증 소지자는 가산점 부여)
 토목, 건축, 시설, 전기, 전자, 통신, 지도, 영상, 일반기계, 금속, 용접, 물리분석, 화학분석, 유도무기, 총포, 탄약, 전차, 차량, 인쇄, 선체, 선거, 함정기관, 잠수, 기계, 항공기관, 항공보기, 항공지원, 기상, 기상예보, 의공 등 30개 직렬
 * 가산 대상 자격증·면허증 세부내역은 [붙임2] 참조
- (2) 가산점은 6급~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 응시자에 한해 적용함.
 ※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증 소지 필수 직렬(12개*) 응시자에게는 응시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사서, 환경, 전산, 사이버, 항해, 약무, 병리, 방사선, 치무, 재활치료, 의무기록, 영양관리
- (3) 가산비율 :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7급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5%	3%	5%	3%

라. 유의사항

- (1)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거나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가산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소지할 경우 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점과 공개경쟁채용시험 가산 자격증·면허증의 가산점은 각각 적용함.
- (2)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기간 또는 자격증·면허증 수정입력 기간에 국방부 군무원채용관리 홈페이지(<http://recruit.mnd.go.kr>)를 접속하여 취업지원대상/의사상자 등 가점비율, 가산 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 등을 입력하여야 함.
- (3) 필기시험 때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4) 취업지원대상/의사상자 등 여부 및 가점비율과 가산 자격증·면허증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

9 취업지원대상 및 가산 자격증·면허증 현황 수정입력

가. 수정입력 사유 및 요령

- 원서접수 이후 취업지원 대상 자격 또는 가산 자격증·면허증 신규취득 등에 따라 원서접수 시 입력한 자격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반드시 수정입력 기간에 국방부 군무원채용관리 홈페이지 (<http://recruit.mnd.go.kr>)를 방문하여 해당 변동사항을 수정입력해야 해당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음.

※ 국방부 군무원채용관리 홈페이지(<http://recruit.mnd.go.kr>)를 방문하여

<My Page> → <자격증현황> 에서 수정

나. 수정입력 기간 : '22. 7. 16.(토) 09:00 ~ 7. 20.(수) 18:00 / 5일간

다. 수정입력 항목

- (1) 취업지원대상/의사상자 등 여부 및 가(산)점 비율
- (2) 가산 자격증·면허증 종류, 번호, 취득일 및 가산비율

10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위 외 다른 직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으며(단, 국방부 주관 시험 내 다른 직위에 중복하여 응시할 수 없음) 장애인 구분모집이 아니더라도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음.
- 장애인 등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국방부 군무원채용관리 홈페이지(<http://recruit.mnd.go.kr>)를 통해 반드시 확인필요.**
 - * 응시원서 접수 시 장애유형 및 정도를 표기한 응시자 중 편의제공을 원하는 응시자는 군무원 채용관리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편의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 제출기간 : '22. 5. 24.(화) ~ '22. 5. 26.(목)
(5. 26일자 우체국(등기우편) 소인분까지 유효하게 접수)
 - * 제출방법 : 제출기간 내 등기우편으로 아래 주소로 제출(직접방문 또는 택배를 통한 서류제출 불가)
 - ※ 제출주소 : (우) 0438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군무원정책과 군무원채용담당

11 제출 자료 (해당자에 한함)

가. 응시자 공통(해당자에 한함)

- (1) 장애인 등 편의제공 신청자: [별첨] 2022년도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안내' 참고
- (2) 의사상자 등 가점 적용 대상자: 해당 대상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① 제출기간 : '22. 5. 24.(화) ~ '22. 5. 26.(목)
 - * '22. 5. 26.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직접방문 또는 택배를 통한 서류제출 절대 불가)
- ② 제출방법 : [붙임3] 양식에 필요사항을 기재 후 인쇄하여 규격봉투 겉면에 부착하고, 상기 (1)의 제출자료를 봉투에 동봉하여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송부(우측 상단에 반드시 응시번호 기재)
- ③ 제출주소 : (우) 0438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군무원정책과 군무원채용담당

나. 공개경쟁채용

• 완화된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적용대상자

(1) 적용 대상 기준

- 해당 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으며,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
 - ① ‘두 귀의 청력 손실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인 사람
 - ② ‘두 귀의 청력 손실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2) 제출서류 등 안내

대 상 자	제 출 서 류
① 두귀의 청력손실 80dB이상인 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사본 중 1부 - 영어능력검정시험 공인성적표 사본 1부
② 두귀의 청력손실이 60dB 이상이고 두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자	- 의사진단서 원본* - 영어능력검정시험 공인성적표 사본 1부

- * **의사진단서 원본(의사 소견서 불인정)** : 2020년 1월 1일 이후에 발급된 진단서만 인정
- ① (발급기관)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 등 청력 상태를 검진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
 - ② (의사진단서 필수 포함 내용) 면제대상 판단 기준 검사방법, 장애정도 및 유형 등에 관한 구체적 진술, 듣기점수 제외 해당 여부
- *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호)에 따라 검사

< 전문의 진단서 발급 내용 예시 >

<p>상기인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청력손실과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를 검사한 결과,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며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명료도가 30%이하인 사람으로서 군무원 임용시험의 어학능력검정 시험 듣기점수 제외 대상 기준에 해당합니다.

(3) 신청방법 및 절차

- 원서접수 시 청각장애인임을 표시하고 유효한 기간 내의 의사진단서 원본과 영어 성적표 원본을 모두 등기로 제출*
- 의사 진단서 등을 위·변조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군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p>① 제출기간 : '22. 5. 24.(화) ~ '22. 5. 26.(목) * '22. 5. 26.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직접방문 또는 택배를 통한 서류제출 절대 불가)</p> <p>② 제출방법 : [붙임3] 양식에 필요사항을 기재 후 인쇄하여 규격봉투 겉면에 부착하고, 상기 (1)의 제출자료를 봉투에 동봉하여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송부(우측 상단에 반드시 응시번호 기재)</p> <p>③ 제출주소 : (우) 0438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군무원정책과 군무원채용담당</p>
--

12 부대(기관) 정식 및 약칭 명칭 안내

정식 명칭	약식 명칭	정식 명칭	약식 명칭
국군수송사령부	수송사	국군체육부대	체육부대
정보사령부	정보사	국방시설본부	시설본부
777사령부	777사	국방부조사본부	조사본부
사이버작전사령부	사이버사	국방부검찰단	검찰단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안보사	국군복지단	복지단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통사	국군재정관리단	재정단

13 기타 유의사항

- 가.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공고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 응시원서 상의 허위 기재 또는 자격요건 미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 자료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마.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부대 인력운영 사정 상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바. 시험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무원정책과 군무원채용담당(02-748-5106, 5115, 528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자.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며, 당해 시험에서만 응시서류로 활용합니다.
- ※ 육·해·공군 및 국직부대(기관) 6급 이하 군무원 채용 관련사항은 각 군 본부의 인터넷 누리집 참조
(문의처 : 육군 042-550-7145, 042-550-7148~7149 해군 042-553-1284, 공군 042-552-1453)

14 2022년 공개경쟁채용 및 경력경쟁채용 주요 변경사항 안내

가. 원서접수 시 PC환경은 모든 웹브라우저에서 접근 가능합니다.

※ 모바일 환경 원서접수(결제) 불가

나. 가산점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5)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은 **11** **제출 자료** 를 참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군무원 채용 필기시험 과목

①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 (단, 공통과목은 영어 및 한국사이며 ‘영어’ 과목은 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직렬	계급	시 험 과 목
행정	7급	국어,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9급	국어, 행정법, 행정학
군사 정보	7급	국어,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심리학
	9급	국어,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기술 정보	7급	국어,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암호학
	9급	국어,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통신	7급	국어, 통신공학, 전기자기학, 디지털공학
	9급	국어, 통신공학, 전자공학
전산	7급	국어,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정보보호론
	9급	국어,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사이버	7급	국어, 정보보호론, 네트워크 보안, 소프트웨어공학
	9급	국어, 정보보호론, 네트워크 보안
지도	7급	국어, 지리정보학(GIS), 측지학, 응용측량학
	9급	국어, 지리정보학(GIS), 측지학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직렬 \ 자격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통신	정보통신, 전자응용	통신설비, 전자기기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무선설비, 정보기기응용, 전파전자통신,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산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관리, 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정보통신	전자계산기제어,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정보보안, 정보통신	
사이버			정보통신기사, 정보보안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지도	지적,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도화, 지도제작, 항공사진

※ 폐지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시 및 가산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별표 5를 적용하되 응시계급별 자격등급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응시 및 가산 자격증은 필기시험 전일('22. 7.15.)까지 취득하여야 한다.

- 5급 및 7급 : 기사 이상, 9급 : 산업기사 이상

- 단, 9급에 기능사 자격증을 적용하는 경우에 7급을 산업기사 자격증 이상으로 적용 가능

[붙임3]

보내는 사람

[응시번호]

받는 사람

[우]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군무원정책과

[장애인/의사상자 등 관련 제출서류 재중]

군무원채용담당 앞